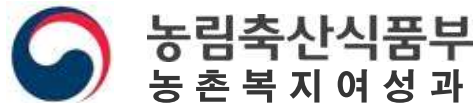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안)

2019. 5.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장 이연숙 사무관 김경은	044-201-1571 044-201-1572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부장 김기진 대리 김경동	031-8084-9561 031-8084-9564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540	1,080	(미정)	계속
국고(70%)	378	756	(미정)	계속
지방비(30%)	162	324	(미정)	계속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발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힐링)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도시민,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 계층 아이들의 컴퓨터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잠자리와 좋은 음식, 소소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체험농장 역할도 하고 있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힐링이 필요한 도시민**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업의 '18, '19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20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예정인 마을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 동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민·조직·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 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융화 유도
 -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9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20년도에 **체험휴양마을**(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0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우대요건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가점 부여
-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 가점 부여

○ '19년도 사업자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19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20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20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20년도에도 지속 지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문에 한해 지원 가능
-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단,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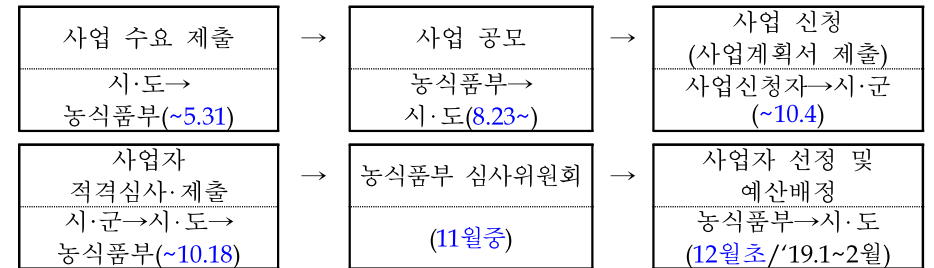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20년도 신규신청자)



2.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안)을 시·도에 시달하고 ‘20년도 사업 수요조사 진행(~5.31)

○ 농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20년도 사업 공모(8.23~)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둘째 주)

《‘20년 신규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0.4)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0.18, 기한 엄수)

《‘19년 기존사업자》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20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6까지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12월초)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는 (1차)서류심사(10월말), (2차)현장심사(11월중순), (3차)발표심사(11월말)를 거침
 -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20.1월)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0.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0.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조직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1.1.15)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1.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21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3.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어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 '19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숍,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 썩,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썩,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 지역특산물·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레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o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아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o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m ²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2-2호 서식] (* 계속사업자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18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19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0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1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2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2.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예시)
-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 o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o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 o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 '19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잡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숍,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예시)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4.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 썩,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썩,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물·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5. 예산 집행 계획(예시)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회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 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4. 사업 이용자(취약계층)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축되고 마을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 (예산 집행의 적절성)
- (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 (건의사항)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영농조합법인									

2. 일반현황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8	'19(A)	'20(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논(m ²)						
- 밭(m ²)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인 경우
- 조합원 수						
- 고용인원						

3. 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 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획	실적	도비		시군비			총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2. 사업 주요 성과

-
-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 총평
- (시군청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